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7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최기상 · 이광희 · 조인철
강준현 · 박 정 · 한민수
전용기 · 이정문 · 정준호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되었음. 이는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자 역량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후 단계적인 민영화와 전력시장 경쟁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었음.

그런데 후속 구조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체제를 유지한 채 유사한 사업과 기능을 각각 수행하여 왔음. 그 결과 발전회사 간 경쟁 촉진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의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어 발전공기업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한편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해외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발전공기업의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해외 연료 의존도를 함께 낮추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전력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발전회사에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투자, 사업개발 및 인력·설비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소비자의 부담과 미래 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5개 발전회사 통합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을 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및 에너지 전환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정의로운 전환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제6조).
- 다. 발전회사를 통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 마. 통합발전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통합발전회사의 정관 작성, 임원 추천 등 설립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통합에 필요한 절차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회사”란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나.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마.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 “통합”이란 제1호에 따른 발전회사 전부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발전회사”란 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발전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전기사업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합발전회사의 설립 등) ①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한다.

② 통합발전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③ 통합발전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한다.

④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는 통합발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한다.

⑤ 통합발전회사의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통합발전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사업소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⑦ 통합발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통합발전회사의 사업) 통합발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발전연료의 조달과 발전설비의 운영·정비 및 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발전설비의 전환·재활용
· 해체 및 발전소 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통합발전회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통합발전회사의 책무) ① 통합발전회사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통합발전회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통합발전회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의 인가) ① 발전회사는 이 법에 따라 통합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통합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으로 전력수급 또는 전력품질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에 기여할 것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5. 전기사용자 및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아니할 것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인가의 효과)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① 통합발전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발전회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통합에 관하여 「상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각 발전 회사의 이사회 의결로써 갈음한다.

②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제11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통합발전회사는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통합발전회사에 승계된 재산과 채권·채무의 가액은 통합발전회사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통합발전회사가 발전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발전회사의 명의를 통합발전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2조(고용계약 승계) 발전회사와 그 직원 간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통합발전회사가 승계한다.

제13조(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회사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합추진위원회 설치) ① 발전회사의 통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된다.
-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발전회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임원
 3. 전력산업, 에너지, 재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정보통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추진위원회는 발전회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추진위원회는 「상법」 제17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설립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통합발전회사의 정관 작성과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한다.
- ⑦ 추진위원회는 발전회사를 대신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 인가의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보완, 그 밖에 통합 인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는 발전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⑧ 추진위원회는 통합발전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통합발전회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추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 임명에 관한 특례) ① 추진위원회는 통합발전회사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③ 통합발전회사 최초 임원의 추천 및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조(기존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발전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때 발전회사의 임원(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사업 등 발전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발전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허가·승인·지정·검사·등록 및 그 밖의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신고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통합발전회사가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력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발전회사의 「전기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의 자격은 통합발전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통합발전회사의 자격으로 본다.

제7조(발전회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발전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발전회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
터 통합발전회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